

『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도시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상징조형물인 예스구미타워의 근거 규정과 사용·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상징물을 휘장, 마스코트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에서 도시브랜드슬로건, 예스구미타워를 추가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 및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도시브랜드슬로건 상표출원 및 등록(2007.10.24)
- 예스구미타워 상표등록 출원(2007.11.20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도시홍보 및 대 내·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구미시의 상징물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기존 구미시 상징물인 「휘장, 마스코트, 캐릭터, 동물, 식물」 등에서 「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」를 상징물에 추가하는 내용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구미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구미시 상징물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